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5 회 임시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안 설 명 서



2025. 10.

박 정 환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박정환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물품을 과도하게 수집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도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 및 제5조에는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5년 10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 사회적 고립 해소를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101
----------	----------

발의연월일: 2025. 10. 10.

발 의 자: 박정환 김해철 이영빈
박종길 황국주

1. 제안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민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5조)
- 라.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제23조, 제 27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의2
-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
7.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3.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

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달서주거복지센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사~차. (생략)
- 3.~7. (생략)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민간의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자원봉사, 기부 등 나눔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2. 사회보장정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 부문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사회보장에 참여하는 데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이하 이 조에서 “위기가구”라 한다)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공유받은 정보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결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
2.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